



KOREAN

Important Notice

다음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무사항은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반드시 참고

01 출입국관리법 제35조(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)

등록사항*이 변경된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* 성명·성별·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/ 여권의 번호·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/ 방문취업(H-2) 자격자의 취업개시 사실 등

02 출입국관리법 제36조(체류지변경의 신고)

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 신 체류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나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03 출입국관리법 제25조(체류기간연장허가)

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(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)

※ 전면 방문예약기관의 경우 사전에 [하이코리아\(www.hikorea.go.kr\)](http://www.hikorea.go.kr)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신청 가능(외국인종합안내센터 ☎1345 또는 하이코리아 참고)

04 출입국관리법 제21조(근무처의 변경·추가)

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*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* 일부 전문인력 등의 체류자격자는 15일 이내 신고

05 출입국관리법 제23조(체류자격의 부여)

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